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(영구시설물 축조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 2230 2021년 3월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2월 5일, 서울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21년 3월 3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)

가. 제안이유

○ 옥수동 주택가는 주변 주차수요가 높음에도 성동구에서 주차확보율 이 64%(서울시 평균 102%)로 매우 낮아 도로상에 불법주차량이 많아 심야 시간대는 화재 등 유사시 도시안전에 문제가 있어 적극적 인 대책이 필요하여 성동구에서 옥수유수지 복개 및 유수지상부 주 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○ '20년 6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의 적합함을 증명하였고 사업추진을 통한 유수지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「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」을 조성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토지개요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77-1번지, 77-3번지

- 면 적: 1.154.4 m²

- 소 유 자 : 서울특별시(재산관리관 : 하천관리과)

- 도시계획시설: 유수지, 주차장

- 공시지가

* 〈옥수동 77-1〉353,407천원 [m²당 공시지가 2,059천원 × 면적 171.64m²]

* 〈옥수동 77-3〉 4,292,783천원 [m²당 공시지가 4,368천원 × 면적 982.78m²]

○ 시설 개요

- 시설물(용도) :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77-3번지 등 6필지

- 시설규모 : 연면적 1,326.42 m², 주차장 47면

- 사 업 비 : 3.376백만원(주차장특별회계, 시비, 구비편성)

- * 시비 2,026백만원(주차계획과), 구비1,350백만원(성동구 교통지도과)
- * 설계·감리비 302백만원, 공사비 3,064백만원, 시설부대비 10백만원
- 사업기간 : 2018. 11. ~ 2021. 12.
 - * 의회동의 사전절차 이행기간 포함(건립계획방침, 중기재정계획, 타당성조사 용역, 중앙투자심사, 기본 및 실시설계 등)
- 주요시설 : 주차장 47면, 관제시설, CCTV 등
- 그간의 추진사항
 - '18.11. :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(구비 20백만원)
 - '19. 5. : 서울연구원 타당성 검증
 - '19. 7.: 市 투자심사의뢰
 - '19. 8. :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(자치구 의사 결정)
 - '19. 9. : 市 투자심사 결과 '반려'
 - * 주차장 출구 및 주차구획 위치 변경
 - *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에 주차장건립계획 반영 후 추진
 ※ 당초 복개하여 공원조성('13) → 변경 공영주차장 조성('19)
 - '19.10.~'20. 4.: 市유관부서 협의(하천관리과, 물순환정책과 등)
 - '20. 4. :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준공(하천관리과)
 - *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반영
 - '20. 4.: 市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(市 주차계획과)

- * 보완내용: 市 유관부서 의견 반영, 투자심사 자료 보완
- '20. 6.: 市 투자심사 통과(조건부)
 - * 국유지 사용협의
 - * 진출입로 일원화 등 최적안 검토
- '20. 7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
- '20.10. :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료감면 협조
 - * 성동구 → 市하천관리과
- '20. 7.~'20.11. : 추가 협의사항 설계에 반영조치
 - * 방재성능 확보, 구조검토, 복개기초 간격, 높이 등(하천관리과→성동구)
- '20.12. : 구비(13억원) 사고이월 조치(자치구 예산)
 - * '19년 명시이월 6억, '20년 예산 7억

○ 향후 추진일정

- '21. 2. ~ 3. : 시의회 안건상정
 - *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(안)
- '21. 3. : 공유재산 심의 제출(자산관리과)
 - * 시유지 토지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
- '21. 3. ~ 12. : 공사시행 및 준공
- '21.12. : 주차장 운영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○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77-1, 77-3번지에 위치한 옥수유수지 부지 상부에 주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수요를 해소하 기 위해 성동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(이하 "법")」제13조1)와 동법 시행령 제9조2) 등에 따라 시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설치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

[그림 1]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 시유지 편입 현황

^{1) 「}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^{2) 「}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 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10. (생략)

^{11.}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경우



<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전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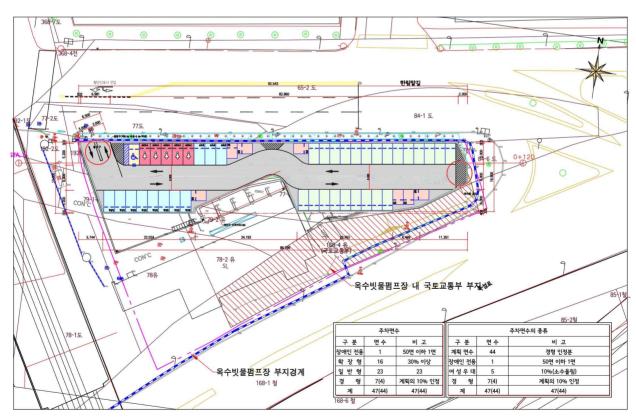


<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후 예시 > [그림 2]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전후 비교

■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현황

○ 동 사업은 옥수동 296번지 주택밀집지역(118세대)의 주차확보율 이 49.8%에 불과(부족한 주차면수 115면)하여 상습적인 불법주차 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차,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성동구가 이를 해결하고자 옥수유수지 상부 공간에 공영주차 장(연면적 1,326.42㎡, 주차장 47면)을 설치하려는 것으로,

성동구는 동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적 정 부지의 확보가 곤란하자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50m 정도의 보행권에 위치한 옥수유수지를 주차장 건설의 적정부지로 판단한 것임.



[그림 3]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상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(안)

- 서울시와 성동구는 2019년 8월부터 옥수유수지 상부 복개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유지 957.9㎡에 대해 사용 협의를 추진하였는데, 2020년 6월 동 사업이 市 투자심사를 조건부(유 관부서 의견 반영 등)로 통과하고,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(하 천관리과-8523, 2020.6.10.)³)에 동 사업 계획이 반영됨에 따라합의가 전제되었다고 보고 본 사업을 추진해왔음.
- 한편,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76백 만원을 투입(시비 20억 26백만원(서울시 주차계획과) + 구비 13억 5천 만원(성동구 교통지도과))하여 2021년 12월까지 주차장 47면을 조성 완료할 계획인데.
- 시비 20억 26백만원은 2021회계년도에 "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구차장 건설 확충(교통사업특별회계)" 사업으로 편성되어 본 동의 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될 예정이고.

구비의 경우 2019년에 6억원을 편성한 후 차년도로 명시이월한 상태에서 2020회계연도에 7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13억원이 2021회계연도로 사고이월 된 상태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득하기도 전에 사업은 이 미 확정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.

³⁾ 서울특별시(2020),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p157

■ 옥수유수지 상 영구시설물 축조 타당성 검토

- 옥수유수지는 1985년 한강을 수계로 유역면적 615,000㎡에 대해 2,345㎡의 유수지(유수면 면적 1,300㎡)를 설치한 것인데 저류용량은 4,400㎡로, 동 계획상 유수지 설계수위는 바닥고기 준 H=3.385m에 해당함.
- 최근 옥수유수지 현황측량 결과, 저점부 높이가 3.41m이고 유수면 면적은 1,250m²로 측정되었으며, 이는 저류용량 4,400m³를 기준으로 할 때 환산수위가 3.520m가 되어 저점부 높이 (3.41m) 대비 11cm가 부족한 것이 현재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.
- 현 상황에서 본 동의안이 제시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, 공영주차장 바닥 복개를 위해 유수지 내에 기둥 20개 (0.6m×0.6m)를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데 기둥이 차지하는 면적 7.2㎡를 감안하면 최종 유수면 면적은 1,242.8㎡가 됨.
- 여기서, 저류용량 4,400㎡를 기준으로 할 때 환산수위가 저점부 높이(3.41m) 대비 13㎝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, 성동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수지 옹벽 상부 사면에 차수층을 설치하여 환산 수위 부족분을 해소함은 물론 기본계획 상에 설계용량(4,400㎡) 및 여유고(1m)를 확보한다는 계획임.

[표 1] 옥수유수지 복개 전·후 저류용량 검토 현황

구분		저류용량 (m³)	유수면 (m²)	환산수위	저점부 높이 (m)	과부족고	비고
		(111)	(111)	(m)	(m)	(m)	
유수지 관리 기본계획			1,300.0	3.385		0.025	
현황 측량	복개 전	4,400	1,250.0	3.520	3.41	-0.110	
	복개 후		1,242.8	3.540		-0.130	

- 따라서,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, 성동구의 설계용량 확보 계획 중 차수층의 역할이 유수지의 안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, 차수층에 대한 설계와 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,
- 서울시와 성동구는 본 동의안과 같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운 영하기 위해서는 유수지 고유의 성능이 저감되거나 기능 유지에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점을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임.
- 참고로,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옥수유수지 연간 최고수위 현황을 살펴보면 [표 2]와 같고, 2020년에 최고 수위 1.05m에 불과하여 지금의 환산수위(3.520m)와 비교할 때 유수지 용량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[표 2] 2012년~2020년 옥수유수지 연간 최고수위 현황

연도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유수지 연간 최 고수위(m)	0.1	0.34	0.97	0.02	0.06	0.01	0.03	0.12	1.05

■ 시유지 상 영구시설물 축조 법적 타당성 검토

○ 2020년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4)에 따르면 "영구시설 물이란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 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 시 오히 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"을 의미하고,

⁴⁾ 행정안전부(2020), 공유재산 업무편람 p44,

공유토지 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 래할 수 있으므로, 법 제13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 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 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음.

- 즉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(국 가 제외)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5)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문서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가 가능6)함.
- 여기서, 지방자치단체간의 '문서상 합의'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본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(2021.2.5.)에는 합의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난 2월 25일 서울시장(권한대행)과 성동구청장간 의 합의문이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본 동의안의 법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사료됨.

[붙임] 「서울특별시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(영구시설물) 축조」 관련 합의서

^{5) 「}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5조(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) ① 생 략

② "행정재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^{1.} 공용재산

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^{2.} 공공용재산

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^{3. ~4.} 생략

③ 생 략

^{6)「}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89호, 시행 '19.12.15.

[붙임] 「서울특별시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(영구시설물) 축조, 관련 합의서

『옥수유수지 영구시설물(주차장) 축조』을 위한 합의서



서울특별시(이하 "서울시"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"성동구"라 한다)는 서울시 소유의 옥수유수지내에 성동구에서 영구시설물(주차장) 축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합의는 서울시 소유인 옥수유수지 내에 성동구가 축조하는 영구시설물 및 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대상 토지 및 영구시설은 아래와 같다.



① 토지
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77-1 (지목 : 유수지)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77-3 (지목 : 유수지)

② 영구시설물

- 규모: 연면적 1.326m²

[주요시설 : 공용주차장 47면(평면식), 관제시설, CCTV등]

- 용도 : 공영주차장

- 건립목적 : 옥수동 296번지 일대 주택가 불법주차 해소와 보행환

경을 개선하여 도시안전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

제3조(시설의 건설)

- ① 공영주차장(영구시설물) 건설공사는 "성동구"에서 시행 한다
- ② "성동구"는 영구시설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문제 및 민원 등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③ "성동구"는 공사착공 및 준공 등 공사 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은 "서울시"에 통지 한다

제4조(소유권)

- ① 제2조 제2항의 영구시설물은 "성동구"의 소유로 귀속된다
- ② "성동구"는 제2조 제2호의 영구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제2조 제1항의 토지에 "지상권" 등 어떠한 사권도 설정할 수 없다. 단 "서울시"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

제5조(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)

- ① "서울시"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에 대하여 "성동구"에 무상으로 사용·수익허가를 한다. 허가조건 등 무상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및 『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』규정에 따른다.
-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공영주차장 존치기간으로 한다. 다만 "성동구"는 방재시설 확충으로 인해 "서울시"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없이 철거한다.

제6조(영구시설물 관리·운영)

"성동구"는 영구시설물 건설공사 완료후 제2조 제2항의 건립목적에 맞게 주차장 시설을 관리·운영한다.

제7조(중도해제·해지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"서울시"는 본 합의를 중도 해제·해지 (이하 "해제 등"이라한다)할 수 있다
 - 1. 천재지변,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움 경우
 - 2. 시설물의 노후화나 기능저하 등으로 철거가 결정된 경우
 - 3. 공공계획에 의해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가 결정된 경우
- ② 본 협약은 "서울시"와 "성동구"의 합의로 해제 등을 할 수 있다
- ③ "성동구"는 "성동구"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해제 등에 대하여 "서울시"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, "서울시"는 "서울시"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등에 대하여 "성동구"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

제8조(원상복구 등)

- ① 제7조에 따라 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제 등을 하는 경우 축조된 영구 시설물은 "정동구"의 비용으로 축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.
-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"성동구"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"서울시"가 원상복구 후, 그 비용을 "성동구"에 청구할 수 있다
- ③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합의가 종료되거나 중도해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"성동구"는 "서울시"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

제9조(합의의 해석)

본 합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합의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,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르고, 규정이 없는 경우 상호 혐의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(합의의 효력 등)

- ① 본 합의는 제2조 제1항의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·수익허가 통보일 및 제2항의 영구시설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의회 축조 동의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본 합의를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"서울특별시장"과 "성동구청장"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. 02.



서 울 특 별 시 장

성 동 구 청 장



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- 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(영구시설물 축조) 동의안

의 안 번 호 2230

제출년월일: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옥수동 주택가는 주변 주치수요가 높음에도 성동구에서 주치확보율이 64%(서울시 평균 102%)로 매우 낮아 도로상에 불법주차량이 많아 심야 시간대는 화재 등 유사시 도시안전에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성동구에서 옥수유수지 복개 및 유수지상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나. '20년 6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의 적합함을 증명하였고 사업추진을 통한 유수지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「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」을 조성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토지개요
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77-1번지, 77-3번지

○ 면 적: 1,154.4*m*²

○ 소 유 자 : 서울특별시(재산관리관 : 하천관리과)

○ 도시계획시설 : 유수지, 주차장

○ 공시지가

- 〈옥수동 77-1〉 353,407천원 [m²당 공시지가 2,059천원 × 면적 171.64m²]

- 〈옥수동 77-3〉 4,292,783천원 [m²당 공시지가 4,368천원 × 면적 982.78m²]

나. 시설 개요

- 시설물(용도) :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77-3번지 등 6필지
- 시설규모 : 연면적 1,326.42m², 주차장 47면
- 사 업 비 : 3,376백만원(주차장특별회계, 시비, 구비편성)
- 시비 2.026백만원(주차계획과), 구비1.350백만원(성동구 교통지도과)
- 설계·감리비 302백만원, 공사비 3,064백만원, 시설부대비 10백만원
- 사업기간 : 2018. 11. ~ 2021. 12.
- 의회동의 사전절차 이행기간 포함(건립계획방침, 중기재정계획, 타당성 조사용역, 중앙투자심사, 기본 및 실시설계 등)
- 주요시설 : 주차장 47면, 관제시설, CCTV 등

다. 그간의 추진사항

- '18.11. :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(구비 20백만원)
- '19. 5. : 서울연구원 타당성 검증
- '19. 7.: 市 투자심사의뢰
- '19. 8. : 옥수빗물펌프장 *공*영주차장 조성계획 (자치구 의사 결정)
- '19. 9. : 市 투자심사 결과 '반려'
- 주차장 출구 및 주차구획 위치 변경
-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에 주차장건립계획 반영 후 추진
- ※ 당초 복개하여 공원조성('13) → 변경 공영주차장 조성('19)
- '19.10.~'20. 4.: 市유관부서 협의(하천관리과, 물순환정책과 등)
- '20. 4. :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준공(하천관리과)
-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반영
- '20. 4.: 市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(市 주차계획과)
- 보완내용: 市 유관부서 의견 반영, 투자심사 자료 보완

- '20. 6.: 市 투자심사 통과(조건부)
- 국유지 사용협의
- 진출입로 일원화 등 최적안 검토
- '20. 7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
- '20.10. :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료감면 협조
- 성동구 → 市하천관리과
- '20. 7.~'20.11. : 추가 협의사항 설계에 반영조치
- 방재성능 확보, 구조검토, 복개기초 간격, 높이 등(하천관리과→성동구)
- '20.12. : 구비(13억원) 사고이월 조치(자치구 예산)
- '19년 명시이월 6억, '20년 예산 7억

라. 향후 추진일정

- '21. 2. ~ 3. : 시의회 안건상정
-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(안)
- '21. 3. : 공유재산 심의 제출(자산관리과)
- 시유지 토지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
- '21. 3. ~ 12. : 공사시행 및 준공
- '21.12. : 주차장 운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〔법률 제17765호, 시행 '21.1.1.〕

제13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<u>다만</u>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-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- 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동의한 경우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〔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89호, 시행'19.12.15.〕

제7조(영구시설물의 축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·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.
-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〈별표 2〉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.

[별표 2]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(제7조 관련)

- 8.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(국가는 제외)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가.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,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 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나. <u>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</u>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
-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[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, 시행 '20.12.31.]

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

③ 시장은 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) 제14조에 따라 <u>하천관리과장 소관 공</u> 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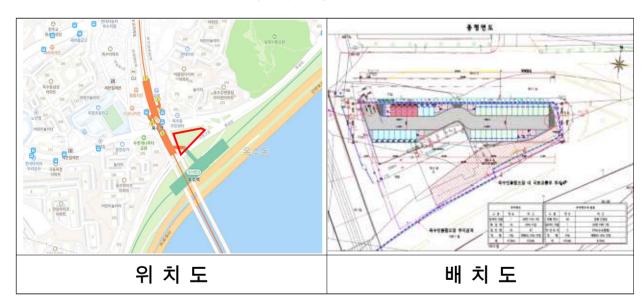
○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[국토교통부령 제758호, 시행 '20.9.10.]

제119조(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·설치기준)

- 2.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.
- 가.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·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 고.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<u>도로·광장·주차장·체육시설·</u>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



※ 작성자 :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민병훈 (☎ 02-2133-3873)